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335호

「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)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」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항행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, 직무기술서 및 인력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점검 수행절차 관련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 고시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감독관의 직무, 점검절차, 점검계획, 점검업무의 수행방법 및 점검 결과의 처리 관련 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~제14조)
- 다. 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관련 기준을 규정함(안 제15조~제24조)
- 라. 감독관 인력산출 기준, 감독 전문인력풀 운영기준, 감독관회의 등 위험

기반 안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5조~제29조)

### 3. 의견제출

「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3월 31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40호  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
- 전화 : 044-201-4299 / 팩스 : 044-201-5631